

연구논문

ADR基本法の立法論에 관한 研究

김 상 찬*

〈목 차〉

- I. 머리말
- II. 基本的 理念 등에 관한 規定
- III. ADR에서 裁判節次로의 移行에 관한 規定
- IV. 裁判節次에서 ADR로의 移行에 관한 規定
- V. 規律對象으로 되는 ADR의 限定
- VI. 맺음말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부교수

I. 머리말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 양이 급증하고 있어 모든 분쟁을 전통적인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UNCITRAL과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사법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성과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에 관한 법리구성에 관하여 검토하여 왔다.¹⁾ 이와 관련하여 각 국가들은 제도기반의 정비로서 ADR의 이용을 촉진하고 재판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규정하는 법률, 이른바 'ADR기본법' 등 법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독일은 1999년 민사소송법시행법 개정으로 동법 제15조a에서, 소액사건, 이웃사람간의 분쟁,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주법에 의하여 조정전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²⁾ 또한 프랑스는 1995. 2. 8.법에서 소송전의 조정 내지 소송중의 조정회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이를 1996. 7. 22. 민소법전에 도입하였다, 특히 1998. 12. 18.법은 법률구조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ADR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또한 영국은 1998년 민사소송규칙에서 ADR에의 회부, 소송절차의 정지, 비협력 당사자에 대한 비용의 제재 등 ADR의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나아가 1996년 가족법이나 1999년司法에의 액세스법에서 조정이나 조기 중립평가 등의 ADR을 법률구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마지막으로 미국법에서도 1998년 연방ADR기본법⁵⁾은 법원의 ADR 이용촉진의무·당사자의 검토의무, ADR담당자의 규율·비밀준수·報酬,

- 1) 양병희,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민사소송」 제1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8, 411면 이하 참조.
- 2) 이에 대해서는 岡崎克彦, "ドイツにおける裁判外紛争解決及び法律相談制度の實情(1)", 判時 1724號 22面 以下 등 참조
- 3) 山本和彦, "民事法律扶助法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1039號 27面 참조.
- 4) 我妻學, "イギリスにおけるADRの實情", 「NBL」 720號 등 참조.
- 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1998.10.30)

ADR회부의 조건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ADR절차 내 정보의 제공가능성, 증거능력,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 간이한 집행력 부여 등에 관하여 정하는 ABA에 의한 통일조정법(Uniform Mediation Act)안⁶⁾을 마련하는데 이르고 있다. 나아가 세계적인 움직임으로서는 국제조정에 관하여 UNCITRAL(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모델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세계 주요국가의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ADR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본법의 제정 목적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 법률에 의하여 ADR을 인지함으로써 정통화의 기능이 생길 뿐 아니라 그 이용이 당연히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현재 기업담당자나 변호사가 분쟁해결방법을 검토할 때에 ADR을 선택하여 실패한 경우에는 왜 소송에 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소송에 의거하려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경향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바, ADR을 공적 제도로 함으로써 그러한 위축효과를 감쇄할 수 있을 것이다.⁷⁾ 또한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도 기본법의 큰 목적이 될 것이다. ADR의 건전한 발전에 의하여 법원과의 연계가 불가결한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바,⁸⁾ 국가기관인 법원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기본법은 개별 ADR의 직접의 규율이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ADR의 규율·표준화는 본래 자유로운 경쟁 아래서 발전해야 하는 ADR을 틀에 얽매이게 하여 그 이점을 감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ADR의 절차내용 자체를 기본법에서 직접 규율하기보다는 ADR기관간에 완만한 調整·통일된 방향만

6) 본고에서 인용하는 통일법안은 2001.2. 단계의 통일조정법위원회의 초안 (<http://mediate.com/articles/umafeb01draft.cfm>)에 의거하고 있다.

7)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법원조정은 이러한 정통화 기능을 이미 구비하고 있다.

8) 프랑스에서도 조정제도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조정활동과 법원과의 연계부족을 들고 있으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 있다.

을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컨대 기본법의 내용으로서는 일반적인 책무규정과 ADR과 재판절차간의 관계로 좁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ADR의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ADR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려 한다. 다만, 이하의 논의 대상은 민간형 ADR⁹⁾을 중심으로 행정형 ADR도 살펴보겠지만 司法型 ADR은 제외한다. 그에 관해서는 이미 민사조정법과 가사조정법이 존재하며, ADR기본법의 내용에 포함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ADR기본법이 생기면, 調整을 위하여 이들 법률도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절차도 본고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중재절차를 ADR기본법 가운데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는 금후의 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법률로서 두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II. 基本的 理念 등에 관한 規定

1. ADR 整備의 理念과 目的

ADR기본법에 규정해야 할 내용으로서는 우선 기본적인 이념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들이 예상된다. 아마 제1조로서, ADR정비의 이념 내지 목적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될 것이다. 이점은 ADR에 무엇을 구하는가에 직접 관계가 있어 논자에 따라서 사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¹⁰⁾ 우리 민사조정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의 통일법안 제2조 제2항은 ‘정보공개에 기초한 자율적·자기결정적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건의서의 취

9) 이에는 辯護士會仲裁센터 등 이른바 公益型ADR도 포함된다.

10) ADR의 의의에 관해서는 Goldberg, Sander and Rogers, Dispute Resolution(3rd ed.), Little and Brown, 1999 참조.

지를 살펴보면, “사안의 성격이나 당사자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을 정비하여 분쟁의 심각화를 방지하는 점이 ADR기본법의 목적으로 생각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에 의해서는 곤란한 해결방법으로서 분쟁의 자주적인 해결, 비공개에 의한 비밀을 지키는 해결, 간이·신속·경제적인 해결, 전문적 식견에 기한 빈틈없는 해결 등을 촉진하는 것이 그 이념이자 목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國家·기타 關係者의 責務

다음으로 ADR의 정비를 위한 국가 기타 관계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이 국가법인 이상 규율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국가가 ADR정비를 위하여 어떠한 책무를 가지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예산조치를 수반한 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원 등 국가기관과 ADR기관과의 연계의 실효화·원활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적·정보적 연계, 법률구조, 개별절차의 관계에서의 연계 등은 모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이외의 관계자에 관해서는 우선 ADR기관운영자·담당자의 책무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직·절차의 제공, 절차·담당자·활동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합의의 자발성·진실성의 보장, 기관간 연계의 충실, 소송으로 이행할 때의 제소지원, ADR담당자의 연수훈련·능력확보 등이 생각된다. 또한 분쟁당사자의 책무로서는 ADR에 의한 해결을 신중히 검토할 책무(미국연방ADR법 제652조a), 상대방의 신청에 성실히 대응할 책무,¹¹⁾ ADR기관의 사실조사 등에 협력할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지만, 다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책무규정이요,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1) 영국법은 일방당사자가 ADR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이 계속된 경우, ADR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가 패소하면 이를 소송비용의 산정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3. 人的·情報面에서의 連繫

국가의 책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인적·정보면에서의 법원과 ADR기관의 연계가 문제로 된다. 담당자에 관한 인적면에서의 연계로서는, 판례정보 등의 적극적인 공표에 의한 ADR기관과의 정보의 공유, 조정위원 등의 연수와 ADR담당자의 연수의 유기적 연계, 인재교류의 촉진 등이 생각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조정자에 관해서 자격화를 추진하고 司法ADR과의 인재의 공동화를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¹²⁾ 또한 정보면에서의 연계로서는 상담창구의 연계에 의한 소송·ADR을 포함한 종합적 상담창구를 충실히 하고 인터넷상의 포탈사이트(portal site)등의 형태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계의 지원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ADR기관에 관한 광고·정보공개나 적절한 기관에의 사건분배 등의 기능을 가지는 ADR지원센터 등의 기관의 정비나 ADR상담·조정원 등의 직능의 활동지원 등도 해야 할 것이다.¹³⁾

4. 法律救助의 適用

국가의 책무로서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면에서의 연계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직접적인 지원조치로서 법률구조의 이용이 생각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법률구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ADR이 참으로 '국민에게 재판절차와 나란히 매력적인 선택'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는 국민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12) ADR담당자의 자격은 인접법률전문직종 등과의 관계에서 법제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ADR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교섭중재 등에 대한 전문적 자질면에서의 자격화가 본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山本和彦, "裁判外紛爭解決手段(ADR)의擴充·活性化に向けて", 「NBL」 706號, 9面 참조.

13) 山本和彦, "裁判外紛爭解決制度(ADR)", 「ひろば」 53卷 8號 23面 ; Susan M. Lesson, Bryan M. Johnston, *Dispute Resolution in America*, Anderson Publishing Co., 1988. p.137.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ADR은 간이한 절차로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는 변호사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다 중요한 점으로서 기관의 운영이나 ADR담당자의 보수 등에 충당되는 절차비용을 상당 정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비용을 일정한 자격기준 등을 전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대신 지불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나 영국 등도 법률구조의 적용을 ADR활성화의 주요한 방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로서 파악되고 있다.¹⁴⁾ ADR의 충실한 발전이 국가의 책무로서 자리매김 된다면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법률구조의 대상으로서 ADR의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상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특히 ADR이 가지는 소송예방효과에 비추어 법률구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국가의 책무에 더하여 개별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와 ADR의 연계에 관계된 국가의 책무가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절차이행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와 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점이 바로 ADR기본법의 중심적인 규정부분으로서 상정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ADR로부터 재판절차에의 이행 및 재판절차로부터 ADR에의 이행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규율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Ⅲ. ADR에서 裁判節次로의 移行에 관한 規定

1. 時效의 停止(中斷)

우선 선행하는 ADR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 원활하게 사건을 재판절차로 이행시키는 방도로서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문제가 중요한 전제가 된다. 생각건대 ADR절차에 의한 시효의 중단·정지의 조치가 없다면 ADR에서

14) 山本和彦, 前掲 “民事法律扶助法について”, 27面 以下.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경우에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이미 소멸시효 등이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시효기간이 임박하고 있는 때에는 당사자로서는 안심하고 ADR에 의한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고, 이는 결국 ADR의 이용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ADR의 개시에 기초하여 시효진행을 막을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ADR신청으로 바로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민사조정법 제35조 참조), 그러나 ADR이 실패한 경우 실패후 일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때에는 ADR절차개시 때에 제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효정지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 하다(모델법안 제11조 참조).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ADR절차의 개시나 종료의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료할 경우에는 ADR기관의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ADR의 성립을 보다 쉽게 하는 방책으로서, 민사조정법에 있어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제도(민사조정법 제30조)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ADR기관이 직권으로 일정한 판단을 내리고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극적 동의가 가능한 경우도 많다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기본법 중에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ADR기관별 개별규칙의 차원의 문제로 하여 그러한 소극적 동의에 의한 합의성립을 인정하는 것도 완만한 중재합의의 일종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합의성립의 요건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규정은 두어야 할 것이다.

3. ADR에서의 意思表示 등의 利用制限 · 秘密保護

ADR에서의 의사표시 등의 사실에 대한 이용제한·비밀보호는 반드시 ADR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 한하는 논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ADR이 실패한 후의 소송에서의 이용이 가장 큰 문제로 된다. 예컨대, ADR에서 일방당사자가 어떤 조정안을 수락하는 전제로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후의 소송절차에서 자유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ADR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이나 교섭을 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ADR의 절차과정이 쟁점으로 되는 소송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의 調整은 중요한 문제로 되는 바, 많은 입법례는 이 점에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고(모델법안 제12조, 미연방ADR법 제652조d, 통일법안 제5조 이하, 프랑스민사소송법 제131-14조·832-9조 등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소송에서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민사조정법 제23조 참조), 특히 이용할 필요가 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면제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제한의 대상으로 되는 사실로서는, ADR절차과정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안수락의 의사표시, 사실에 관한 자백, 합의안의 내용, 당사자의 신청 등이 생각된다(모델법안 제12조 제1항 참조). 절차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문제인데, ADR에서 제출되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소송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제출의무가 없는 서증 등이 ADR에서 제출된 경우에는 미묘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용제한의 예외로 되는 소송유형으로서는 ADR에 기초한 화해의 무효확인소송이나 ADR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소송 등이 생각되는데, 참고로 통일법안은 조정인·대리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나 소송에서 이용하는 이익이 큰 경우 등을 면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ADR 擔當者의 秘密維持義務 · 證言拒否權 등

위 3항의 문제와 마찬가지로의 견지에서 ADR 담당자의 비밀보호에 관하

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¹⁵⁾ ADR 담당자가 절차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나중에 공개해버리면 결국 당사자는 안심하고 솔직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ADR의 성립이 곤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사조정법은 조정위원이 조정과정 등을 누설하거나 직무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범죄로 처벌하고 있고(민사조정법 제41조), 조정위원 등의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거부권도 인정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ADR에 관한 입법례의 대부분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모델법안 제13조 2항, 통일법안 5조 b항(2)(3)·동 8조 등 참조). 기본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ADR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형벌에 의하여 담보하는 것이나 증거거부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ADR 담당자의 후에 계속하는 소송에서의 지위에 대한 문제로서, 소송대리인 적격을 부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모델법안 제13조 1항 참조). 이 점은 주로 변호사가 ADR 담당자인 경우의 문제이며,¹⁶⁾ 이 경우 변호사윤리의 문제로서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변호사법 제31조 3호 참조),¹⁷⁾ 변리사 등 그 이외의 자도 포함하여 기본법 중에서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¹⁸⁾

5. 證據調查에의 協力

ADR에서 재판절차로의 부분적인 이행의 방법으로서 증거조사에 대한

-
- 15) ADR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를 문제로 할 수도 있지만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비밀보호의 관계에서 논의의 논점으로 되어 ADR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현재로서는 일반불법행위의 문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6)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2.8, 192면에서는 ADR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변호사의 ADR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 17) 이 문제에 관하여 住吉博, “潛在する利害對立がある複數依頼者の『信認代理』”, 「民商」 122卷 1號・2號 참조; 일본에서는, 법원의 조정위원으로서 유언의 목적재산의 일부의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가 유언집행자로 되는 것을 인정한 예가 있다(日大阪高決 1963.12.25, 判時 363號 28面 참조).
- 18) 모델법안 제13조 1항은 중재인적격도 금지하고 있지만, 調停型 ADR로부터 仲裁型 ADR로의 이행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협력을 법원에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민간형 ADR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에 대해서도 사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실을 해명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실해명이 교섭 등의 전제로서 불가결한 경우도 있다.¹⁹⁾ 그래서 그러한 증거조사를 법원에 의뢰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중재절차에는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제도가 있고(중재법 제28조), 민사조정에도 법원에 사실조사·증거조사를 촉탁하는 제도가 있다(민사조정규칙 제8조). 이러한 제도를 ADR절차에 두는 것은 ADR의 간이하고 신속한 이점을 잃어버릴 우려는 없지 않지만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6. 執行力 附與

ADR이 합의에 성공한 경우에 법원의 협력방법으로서 ADR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할 때 법원으로 하여금 관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ADR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DR에 기초한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물론 합의의 시점에는 당사자에게 履行意思가 당연히 있고 실제로도 임의이행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되지만,²⁰⁾ 장기간 걸리는 변제 등의 합의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ADR에서 행해진 합의에 바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원칙상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다.²¹⁾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판단이 내려지면, 그 합의에 관하여 화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

19) 금융관계의 ADR에 있어서는 특히 사실인정이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경우가 많다(山本和彦, 前掲“裁判外紛爭解決制度(ADR)”, 47面 참조).

20) 소송상의 화해에 관하여 임의이행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관해서는, 伊藤眞外, “當事者本人から見た和解”, 「判例タイムズ」 1008號, 24面以下 참조.

21) 모델법안 제16조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확실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三木浩一, “商事仲裁法制の國際的 調和に關する新たな動き(上)”, 11面 참조.

이 이용될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원이 관여하는 형태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 ADR의 실효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ADR합의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결정(집행결정)을 하는 제도가 생각될 수 있다. 프랑스법이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집행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프랑스민소법 제131-12조, 제832조-8조 참조)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합의의 진실성, 대리의 적법성, 합의의 합법성(공서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절차의 간이·신속성에 배려하여 중재의 경우(중재법 제37조 제1항)와는 달리 판결절차(집행판결)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또한, 집행력부여의 조건으로서 ADR의 절차규율의 내용을 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율은 그것에 의하여 ADR절차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입법례²²⁾도 존재하므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ADR의 절차를 통일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고 또한 법원의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면도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나중에 살펴보고 있는 규율대상에 포함되는 ADR에 관해서는 위의 최소한의 요건심사에서 집행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裁判節次에서 ADR로의 移行에 관한 規定

1. ADR로 移行하는 決定

재판절차에서 ADR로의 전면적 이행에 관한 규율로서, 수소법원이 소송 사건을 ADR기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고려될

22) 예컨대, 모델법안은 절차의 공정성(제7조 3항)이나 정보개시(제9조)를 문제로 하고 있고, 통일법안 제11조는 당사자 전원의 신청이 있을 것, 동일한 소송이 없을 것, 합의·집행신청 시에 대리인이 존재할 것 등을 집행력부여의 요건으로 한다.

수 있다. ADR기관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시초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사건이 정기적으로 회부되어 일정수의 사건을 거기에서 심리하는 실적이 쌓이고 일반의 신뢰를 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각국에 공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나라의 ADR 관련법제는 ADR기관에의 회부나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ADR전치에 관한 사항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조정제에 관해서는 조정회부 제도가 있고(민사조정법 제6조), 최근에 법원이 이 제도를 비교적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규율을 ADR기본법에 있어서 하는 경우의 최대의 문제는 이행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³⁾ 이 점에 대해서는 입법례도 나뉘고 있다. 민사조정제 경우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민사조정에서 조정회부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쟁점정리 후에는 필요하다고 하여 시기적으로 구별한다(일본 민사조정법 제20조). 다른 한편, 프랑스에서는 항상 동의가 필요로 하는데(프랑스민사소송법 131-1조, 832-1조), 이것은 법제정 전에는 실무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던 것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또한 미연방ADR법은 증제에 한하여 동의를 필요로 하고(동법 제652조 b), 동의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금지될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54조 b). 사법형 ADR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동의를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며,²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면서도²⁵⁾ 예외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유형 등을 검토해 가는 것

23) 또한, 일정한 사건유형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회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구성도 있을 수 있다. 미연방ADR법도 헌법상의 권리가 문제로 되는 사건이나 손해액 15만달러 이상의 사건에 관해서 중재회부를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654조 a).

24) 강제회부로 하는 경우에는 ADR의 비용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법이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한 배경에는 ADR의 유상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와 같이, 유상성을 전제로 강제회부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이 좋을 것이다.²⁶⁾

2. ADR 前置主義

위와 같은 회부를 보다 강력하게 하는 제도로서 ADR에 있어서의 심리를 소송을 제기하는 요건으로 하는 ADR 전치주의를 기본법에 채용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가사조정에서 광범위한 조정전치주의가 채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일본의 경우 가사조정에서의 폭넓은 조정전치주의의 채용과 더불어 민사조정에서도 지대차임증 감청구에 관해서 조정전치가 취해지고 있다(일본 민사조정법 제24조의 2). 또한 독일법도 ADR전치를 ADR법제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사법형 ADR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치강제는 사법형 ADR에만 인정하면 충분하고, 민간 ADR의 관계에서는 법원에 의한 회부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조정전치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법형 조정(법원조정)과 민간형 ADR 중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것은 관과 민의 ADR기관에 경쟁원리가 작용하면서 이용자 서비스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⁷⁾

25) 그러한 동의의 전제로서, 회부하는 ADR의 내용, 회부기간이나 ADR에 있어서의 정보의 소송에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6) 프랑스법에서도 이혼 등 가사사건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있다 ; 山本和彦, “프랑스의 離婚訴訟”, 「케이스연구」 266호, 14면 참조.

27) 당사자가 ADR 회부의 합의를 하고 있는 경우에, 중재합의와 마찬가지로의 妨訴抗辯性을 인정하는가는 하나의 문제이다. 모델법안에는 이 취지의 조문이 있는데 (동법안 제14조), 일반당사자가 ADR의 이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하는 경우에 당연히 ADR절차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면, 항변성을 인정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일방당사자의 제소는 거부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의 妨訴이다.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법원에 의한 재량적인 기간제한을 수반하는 停止制度를 정비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3. 訴訟節次の 停止・回附期間

수소법원이 ADR에의 이행을 결정하여 사건을 ADR에 회부한 경우에 ADR기관에서의 심리기간을 어느 만큼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본법에 규율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정하지 않는다면 무제한으로 되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제에 있어서는 조정에 회부한 경우에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고 하여 특별한 기간제한은 없지만(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 외국의 법제에서는 이 점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영국법은 원칙적인 기간을 1개월로 하고, 1개월에 한하여 연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법도 조정의 종류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로 회부기간을 제한하고, 같은 기간에 한하여 연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프랑스민사소송법 131-3조, 832조). 기본법에 있어서도 ADR기관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가능한 취지의 규정을 설정하여 중지기간을 제한하던가 법원이 회부결정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특히 회부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며,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경우에 있어서도 ADR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심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部分的 移行

소송으로부터 ADR에의 이행의 본연의 모습으로서는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전체를 회부하는 방법 외에, 소송계속 자체는 유지하면서 사건의 일부만을 ADR에 회부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ADR의 이점을 소송에서 살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특히 고려되는 것은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경우이다. 오늘날 전문소송의 처리는 민사소송의 큰 과제의 하나인 바,²⁸⁾ 법원이 전문ADR을 보조적으로 이용하여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생각될 수 있는 이용형태의 하나는 쟁점정리에 관하여 ADR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ADR기관이 쟁점정리를 행하고, 그 결과 화해가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좋고,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심리는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민사조정(전문조정) 중에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²⁹⁾ 또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전문 ADR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독립적 증거조사나 감정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인정을 對審의으로 행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그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시스템도 생각될 수 있다.³⁰⁾ 직접주의와의 관계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이러한 이용방법을 기본법 중에 규정하는 것은 고려할 만 하다.

V. 規律對象으로 되는 ADR의 限定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들이 현시점에서 ADR기본법의 내용으로서 규정할 만한 사항들인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이상과 같은 규율의 대상으로 되는 ADR의 한정이라고 생각한다. ADR은 대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통행인의 다툼에 대한 중재까지 규율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모든 ADR을 기본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³¹⁾

28)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건의서도, 민사사법제도의 이상적인 상태로서 이 점을 크게 문제삼고 있고, 전문위원제도의 도입이나 감정제도의 충실 등 많은 제언을 하고 있다.

29) 이 점에 관해서, 山本和彦, “專門訴訟の課題と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05號, 66面 以下 참조.

30) 일본의 경우, 행정형ADR과의 관계에서 특허판정제도(일본특허법 제71조)나 공해사건원인재정촉탁제도(일본공해분쟁처리법 제42조의 32) 등의 시도가 있다.

31) 미국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모든 분쟁, 즉 민·형사 사건, 소비자와 상인간의 분쟁, 가사분쟁, 부동산, 형사보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분쟁, 학원관계, 환경문제, 노사문제, 교통사고분쟁, 아동학대 및 공공정책 등이 ADR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Leo Kanowitz, Case and Materials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merican Casebook Series, West Publishing Co., 1985. pp. 6-7.

그러므로 규율대상으로 되는 ADR을 무언가의 지표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지표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담당자에 착안하는 방법, 절차에 착안하는 방법, 기관에 착안하는 방법 등³²⁾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담당자에 주목하는 방법은 ADR의 담당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그 ADR의 절차와 결과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생각이다. 이 방법은 담당자가 다해야 할 의무³³⁾나 충족해야 할 요건³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자격을 명시하는 방법³⁵⁾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 절차에 주목하는 방법은 일정한 절차내용(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보장)을 규정하고 그것을 충족하고 있는 ADR에 법이 정하는 효과를 부여한다고 하는 방법이다.³⁶⁾ 마지막으로 기관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ADR을 실시하는 기관을 미리 인증 또는 인가하여 두고 그 기관이 행한 ADR에 관해서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독일은 각 주의 사법행정청에 의한 인가를 조정전치의 전제로 하고 있고, 영국도 법률구조실시기관의 인증을 전제로 법률구조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중, 아마도 우리의 정서로는 마지막 방법이 가장 친하기 쉬운 방법으로 보이며, 이 방법이 개별사건의 경우마다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운용하기에도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이 민간활력을 증시

32) 분쟁유형에 의한 구분도 있을 수 있으나, 당장은 재산사건에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33) 미연방ADR기본법이 중재인에 대한 규율로서, 선서의무나 윤리준수의무 등을 정하는(동법 제655조b 참조) 것은 이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4) 프랑스법이 조정인의 자격요건으로서, 범죄경력 등이 없을 것, 분쟁의 성질에 따른 적합성, 일정한 훈련·경험, 독립성의 보장 등을 정하고 있는(동민소법 제131-5조) 것은 이에 가깝다.

35) 변호사나 일정한 인접법률전문직종의 담당하는 ADR을 정하는 것이 생각되는데, 조정에 관하여 독립한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6) 절차의 내용으로서는 소비자 ADR에 관한 EU공통기준(我妻學, 前掲 “イギリスにおけるADRの實情”, 참조)이 보이는 바와 같이, 적용법·비용 등의 투명성, 당사자의 절차참가권,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판단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이 참고로 될 것이다.

하고 규제를 가급적 배제하려는 국가방침과 부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이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위의 세 가지 방법을 복합하여 규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일정한 담당자나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ADR기관에 대해서 미리 인증을 부여하고, 정형적 ADR기관에 관해서는 집행결정 등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부담을 경감시켜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인증받지 않은 ADR기관에 관해서도 개별적으로 위의 요건의 충족이 입증된 경우에는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예외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VI. 맺음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쟁해결에 있어서 주종을 이루는 메카니즘은 민사소송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분쟁해결의 지연, 과도한 비용, 재판절차의 기술적 난해성, 그리고 경미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 때문에 거부감과 법원 불신이 초래되었다.³⁷⁾ 이같은 이유로 태동하기 시작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는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소송보다 비교적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 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절차진행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기업비밀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고 분쟁해결후에도 당사자간에 재판에서처럼 적대적이 아닌 우의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³⁸⁾ 이와 같은 장점과 더불어 ADR의 활성화는 곧 법원의 부담경감으로 이어지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ADR제도가 점차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선진제국에 비하면 아직도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37) 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제14권, 민사판례연구회, 1992 참조.

38) 양병희, “한국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한일 국제중재 심포지움 발표자료)”, 「중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 2, 4면.

우리나라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민사소송 제1심에서는 전체 처리사건 중에서 약 73%를 판결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화해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비율은 약 9%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민사조정사건은 민사소송사건 접수건수의 4.5%에 불과한 실정이다.³⁹⁾ 일본의 경우 민사사건에서 조정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적어도 20-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⁴⁰⁾

이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사법형 ADR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일반 국민은 민사소송과 사법형 ADR간의 구별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민간형 ADR제도의 구축과 그 활성화가 매우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 ADR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한편으로 사법의 핵심인 재판기능의 충실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ADR이 국민에 의하여 재판과 나란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기반의 정비로서 ADR의 이용 촉진, 재판절차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비롯하여 필요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구체적인 논점으로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효중단(또는 정지)효의 부여, 집행력의 부여, 법률구조의 대상화 등을 위한 조건정비, ADR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절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역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정비 등 들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다양화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민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형 ADR제도는 물론이고 민간형 ADR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본법의 제정 등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39) 김경배, "전계논문", 198면 참조.

40) 김상찬, "민사조정의 본질과 효력에 관한 연구", 「법과정제」 제2호, 제주대 법과정제연구소, 1996, 2면 이하 ; 林屋禮二 編, JURIST 増刊「デ-タムツク民事訴訟」, 有斐閣, 1993, 182면 참고.

ABSTRACT

Research on the Legislation theory of the Fundamental ADR Act

Sang Chan Kim

Currently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A, have developed and contrived to activat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order to both choose effective means for dispute resolution and establish the reformation of the judicial system; thus meeting people's revamped expectations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and diversification in, civil disputes.

This is why there has been some haste in many countries to organize systems for this, so called, 'the Fundamental ADR Act' which regulates the essential structure to accelerate the use of ADR and strengthen the links with trial procedures. For example, in 1999 Germany revised its Civil Procedure Act, to allow for a pre-conciliation process in cases involving only small sums of money. Whilst, with regard to the Civil Procedure Act in France, new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with regard to actions before either a suit or return to conciliation. In the United Kingdom, as far back as 1988, additions to the legal structure allowed for expansion of regulations applying to ADR. By 1999 the new ADR regulations were part of the legal structure of the UK Civil Procedure Act. The USA passed the federal law for ADR in 1998. Since then the world has tried to enact this model in UNCITRAL on international conciliation. When we consider this recent trend by the world's major countries, it is desirable that the fundamental law on ADR should be enacted in Korea also.

This paper traces the object, and the regulatory content required, for

the fundamental ADR law to be enacted in Korea's future. Firstly, the purpose of the fundamental ADR law is limited only to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excluding judicial sector and arbitration, because in Korea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the Civil Disputes Act, the Family Disputes Act and the Arbitration Act already exist. Secondly I will I examine the regulatory content of the basic ADR Act, dividing it into: 1)regulations on the basic ideology of ADR, 2)those on the transition to trial procedures of ADR, and 3)those on the transition to ADR from trial procedures. In addition I will research the regulatory limitations of ADR.

Key words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Fundamental ADR Act, the Civil Disputes Act, the Legislation theory

참 고 문 헌

-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3판)」, 박영사, 2002.
-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새창출판사, 2000.
-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2002. 8.
- 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제14권, 박영사, 1992.
- 양병희,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민사소송」 제1권, 한국민사 소송법학회, 1998.
- , “분쟁의 조정·화해에 의한 해결”, 「일감법학」 제7권, 2002. 12.
- , “한국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한일 국제중재 심포지움 발표자료)”, 「중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 2.
- 林屋禮二 編, ジュリスト増刊「デ-タムツク民事訴訟」, 有斐閣, 1993.
- 岡崎克彦, “ドイツにおける裁判外紛争解決及び法律相談制度の實情(1)”, 判時 1724號.
- 三木浩一, “商事仲裁法制の國際的 調和に關する新たな動き(上)”, NBL 701號.
- 山田文, “アメリカにおけるADRの實情(上)(下)”, 「NBL」 718號・719號.
- 山本和彦, “民事法律扶助法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1039號.
- , “裁判外紛争解決制度(ADR)”, 「ひろば」 53卷 8號.
- , “專門訴訟の課題と展望”, 「司法研修所論集」 105號.
- , “裁判外紛争解決手段(ADR)の擴充・活性化に向けて”, 「NBL」 706號.
- 我妻學, “イギリスにおけるADRの實情”, 「NBL」 720號.
- 伊藤眞 外, “當事者本人から見た和解”, 「判例タイムズ」 1008號.
- 住吉博, “潛在する利害對立がある複數依頼者の「信認代理」”, 「民商」 122卷 1號・2號.

Goldberg, Green and Sander, *Dispute Resolution*, 3rd ed. Little and Brown, 1999.

Leo Kanowitz, *Case and Materials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merican Casebook Series, West Publishing Co., 1985.

Susan M. Lesson, Bryan M. Johnston, *Dispute Resolution in America*, Anderson Publishing Co., 1988